

한국형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 해결책평가 규정

가. 해결책 평가시 유의사항

- 전담기관은 제안된 해결책을 마감일자*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문제제안자에게 전달합니다. 문제제안자는 해당 해결책을 평가하여 해결책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합니다.
(※ 해결책 평가를 위하여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, 문제제안자는 채택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전담기관에 사전 연락하여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.)
* 플랫폼 등록기간의 마지막 날을 의미함. 플랫폼 이용약관 제2조(용어의 정의) 참조.
- 해결책의 평가 및 채택은 문제제안자의 고유권한이며, 해결책 이용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제제안자에게 있습니다.
- 문제제안자는 문제등록시점 이후에 관련 사정의 변경여부를 불문하고, 전문가가 제안한 해결책이 문제등록 시점의 사정에 입각하여 제시한 해결책의 필수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로 평가하여야 합니다.

나. 해결책 채택 및 사용시 유의사항

- 문제제안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해결책은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. 해결책의 일부라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해결책으로 채택하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복수 해결책을 채택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금을 각각 해결책을 제안한 전문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.
- 채택된 해결책은 문제제안자만 사용하여야 하고, 문제제안자는 해당 해결책을 제3자에게 공개/허여할 수 없습니다. 만일 문제제안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.
- 문제제안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플랫폼 운영목적이나 이용약관 및 운영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 문제제안자가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해결책을 무단 이용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, 그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.

다. 해결책 부당이용 등 제재

문제제안자가 아래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문제제안자는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, 추가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집니다.

- 보상금의 지급없이 해결책을 이용하는 행위(타인으로 하여금 해결책을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.)
-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없이 하나 또는 다수의 해결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(타인으로 하여금 해결책을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.)
- 플랫폼 운영목적이나 이용약관 및 운영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이용하는 행위

- 평가 기간 내에 해결책을 평가하지 않거나 고의로 평가를 지연하는 행위
- 채택된 해결책을 제3자에게 공개/허여하는 행위
- 채택된 해결책을 플랫폼 운영목적이나 이용약관 및 운영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
- 만일 문제제안자가 해결책으로 채택하지 아니하여 해당 전문가에게 보상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해결책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될 경우, 문제제안자는 사용한 각각의 해결책에 대해 문제제안계약 체결시에 예치한 보상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전담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, 위 위약금은 전담기관이 문제제안자에게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.

라. 해결책 채택/일부채택/불채택 결정

- 문제제안자의 해결책 채택 결정시, 전담기관은 예치된 보상금(세금 및 관련 수수료 공제 후)을 해당 전문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.
- 문제제안자의 해결책 불채택 결정시, 문제제안자는 그 해결책의 필수항목에 대해서는 각 항목마다 불채택 의견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회신하여야 하며, 불채택한 해결책은 일체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제안된 해결책이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부 내용의 보완 등으로 해결책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, 전담기관에 통보하여 협의해야 합니다. 만일 전문가가 보완을 거부하는 경우 해결책의 보완 없이 해결책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채택/불채택을 결정하여야 합니다.
- 문제제안자가 해결책 일부채택을 하려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에 알리고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. 만일 전문가가 일부채택을 거부하는 경우 해결책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채택/불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.
- 하나의 해결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, 두 개 이상의 해결책에서 각 해결책의 일부분을 이용해야 문제해결이 가능한 경우, 문제제안자는 해당 해결책 모두를 채택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전담기관을 통하여 전문가와 협의하여 보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전문가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문제제안자는 해당 해결책들을 이용하면 안 되며, 그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문제를 해결해서도 안 됩니다.
- 문제제안자가 해결책 채택 결정을 한 경우, 해결책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전적으로 문제제안자의 책임이며, 문제제안자는 전담기관에게 일체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ㄱ 보상금 및 수수료 지급

- 가. **해결책 채택시** 문제제안자가 전담기관에 예치한 보상금은 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공제한 후 전문가 또는 전문가가 소속된 기관에 지급됩니다.
- 나. **수수료 지급** 전문가는 전담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, 다만 그 지급 방법은 전담기관이 전문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, 그 보상금액에서 위 전문가의 수수료 금액에 문제제안자의 수수료 금액을 합한 총 수수료 금액을 상계·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.
- 다. **해결책 불채택 시** 예치된 보상금 원금이 문제제안자에게 반환됩니다.

ㄴ 오프라인 자문 계약의 체결

- 문제제안자가 해결책 **채택** 결정을 한 후 오프라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, 문제제안자는 해결책 평가양식에 '오프라인 자문'을 표기하여 요청하여야 하여야 합니다.
- 문제제안자가 해결책을 채택하여 해당 전문가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후, 전문가가 오프라인 자문에 동의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문제제안자에게 해당 전문가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.
- 오프라인 자문은 문제제안자와 전문가가 별도로 협의하고 진행하여야 하므로, 문제제안자와 전문가는 자문 비용 등 제반 비용, 자문 기간 등 자문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- 문제제안자는 오프라인 자문 계약의 체결 및 그 진행 내용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- 문제제안자가 전문가에게 오프라인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, 전문가는 자문을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그러나 그 승낙 여부는 전문가의 고유권한이므로, 전문가가 위 오프라인 자문을 거부하더라도 전담기관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, 문제제안자는 전문가의 오프라인 자문 승낙 여부를 이유로 하여 해당 해결책 채택 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.

ㄷ 분쟁 발생시

본 플랫폼의 이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, 해당 당사자들은 제1차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 심의절차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2차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니다.

ㄹ 연장 신청시

- 별첨 1. 「한국형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」 문제 등록기간 연장 신청서 1부.
- 별첨 2. 「한국형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」 문제 등록기간 연장 승인서 1부.